

‘政經分離’政策方向下에서 南北韓間 經協 擴大方案

裴鍾烈

해외투자연구소 북한경제팀장

I. 머리말

- II. ‘政經分離’와 經協活性化 方案에 대한 論議
- III. ‘政經分離’ 政策推進의 制約要因과 그에 대한 評價
- IV. ‘政經分離’下의 南北韓間 經協의 方向
- V. 맷음말

요 약

신정부에 의해 ‘政經分離原則’에 의한 경협활성화가 대북정책 추진방향의 하나로 확정된 이후 ‘政經分離’ 政策基調와 經協活性化 方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4·30 南北經協活性化措置’에서 기업의 자율성 존중과 민간주도의 경협추구라는 基本方向하에, ①대기업 총수의 방북승인 등 接觸·訪北要件 및 節次의 簡素化, ②포괄승인품목의 확대, 위탁가공용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등 交易增進對策, ③투자규모 상한선 철폐,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방식의 도입 등 投資規制 緩和對策을 내놓고 있다.

‘政經分離’기조에 대한 민간의 논의는 規制緩和와 行政節次의 簡素化方案에 주로 초점을 맞춘 정부와는 달리 ‘政經分離’의 해석, 경협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와 추진방안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먼저 ‘政經分離’는 ①대북정책에서 정치(=당국자간 대화)와 경제(협력)의 분리, ②經濟的 接近을 강조하는 政府와 民間의 新役割分擔論, ③경제에 대한 정치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政經分離的 政策方向 등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政經分離’는民間분야에만 적용되는 원칙으로 정부간 관계에서는 經濟問題라도 ‘相互主義’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경협활성화의 제도적 장치와 추진방안에 대한 민간의 논의는 ①접촉·방북의 신고제 도입, 경제협력사업 승인제의 단일화 등 法·制度와 行政節次, ②북한정보센터와 對北投資諮詢會社의 설립, 경협전담 민간협의회의 구성, 경협대표부 설치 등 對北接近 組織體系, ③우선지원대상 경제사업의 선정, 실형민 기업가들의 고향지원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등 南北協力基金 등 政府의 支援方式, ④남북 물자교류센터와 남북한 공동시장의 개설, KEDO형 투자사업의 추진, 공단조성사업의 시행, 청산결제제도의 도입 등 交流協力增進事業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남한 경제의 IMF 관리체제로의 이행,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지속, 북한의 경제난과 개혁·개방의 지연 등으로 '政經分離' 정책추진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의 '4·30 南北經協活性化措置'와 민간의 경험활성화방안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한경제의 IMF 관리체제로의 이행으로 야기된 환율상승, 신용위기, 경기침체, 구조조정, 정부의 자금제약 등은 ①북한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하, ②남북교역 물동량 감소, ③경협부대비용의 증가, ④원화환산 투자금액 및 현지운영비의 증대, ⑤대북경협 사업자의 도산, ⑥대북사업부서의 위축, ⑦대북사업의 자금배분 우선순위 하락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實質交易分野를 중심으로 기존 南北經濟交流·協力規模가 축소됨과 동시에 우리의 未來對北經協推進ability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 교류·협력문제에 대한 周邊國의 影響力を 강화하는 구조를 잉태하고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지속은 동아시아 증권시장, 외국인투자시장, 그리고 세계수출시장에서 미국 등 서방권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北韓經濟의 國際競爭力 低下와 함께 中國 인민폐의 平價切下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中國 인민폐의 平價切下는 제2금융위기로 연결되어 ①남한의 대북경협추진능력의 계속적 악화, ②북한 경제의 국제경쟁력의 계속적 저하, ③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미국 등 서방권 영향력의 계속적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민간분야의 남북경제교류에 대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 南北關係에서 國際機構와 周邊國 影響力이 보다 강해지는 구조를 만들게 될 것이다.

저개발도상국경제로서, 개혁·개방전의 사회주의 경제운영 메커니즘이 관철되며, 여타 사회주의경제에 비해 物資不足經濟로 政治論理에 의한 經濟支配度가 높은 北韓經濟體制의 特性은 ①접촉에서 조업에 이르는 경협 사이클에서 성사율이 낮고, ②단기적 성과와 비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며, ③해당사업과 관계없는 프로젝트 진행을 요구하고, ④사업성공의 여건조성보다는 외회벌이에 치중하며, ⑤경제구조상 해당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관된 다른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등의 經協與件을 조성하고 있다. 남한경제의 IMF 관리체제로의 이행,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지속은 남한기업들에게 ①보다 수익성을 강조하고, ②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며, ③자금의 유동성이 민감하며, ④위험회피적인 事業態度를 요구하고 있어 남북한간에 특정사업에 대한 평가갭(gap)은 금융위기전 보다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정경분리' 정책추진의 여건을 감안할 때 남북경제교류의 확대는 남한측의 對北經協與件의 개선뿐만 아니라 북한측의 對南經協與件의 개선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측이 對南經協與件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와 민간의 經協活性化 方案은 對北經協與件과 對南經協與件의 개선에 대한 공헌도 및 북한의 수용가능성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法·制度와 行政節次의 定立은 經協制限的 要素를 제거하는데 비중을 두어야 하지만 남한측의 對北經協與件을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북한측의 對南經協與件 악화에 일조를 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서 對北協商力を 강화하고 對南經協與件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북경협 행정절차의 정비는 일률적인 규제완화 및 절차간소화보다는 順經協指向의 行政節次가 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對北接近組織體系는 민간자율성 존중과 민간주도라는 경협활성화의 기본방향에 맞게 準政府의 性格을 부여하는 것 보다는 순수민간조직이 바람직하며, 對北經協窗口는 多多益善이라는 관점에서 自由競爭體制가 적절할 것 같다. 대북접근체계의 구축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유형보다는 조직의 기능이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投資諮詢會社의 活性화가 필요하다. 投資諮詢會社는 현행의 비정상적이고 고비용지향적인 南北經協事業을 정상적이고 저비용지향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①정보지원, ②협상지원, ③사무실 지원, ④인력지원 등 여러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南北協力基金 등 政府의 支援은 '정경분리' 정책추진의 여건을 볼 때 기금의 지원없이는 IMF 관리체제이전의 교역규모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기금의 지원은 ①기금사용 확대를 통해 기금규모의 증액을 도모하며, ②제3국과의 경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보다는 불리하지 않도록, ③자금제약상황을 고려하여 優先事業을 중심으로 배정하는 방향에서 가능한 다수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交流·協力 增進事業方向은 우선 物資交流센터와 共同市場은 國際接境地帶를 중심으로 국제 물자교류센터로서의 기능과 국제공동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기미되는 형태로, 공동조성사업은 國際物流體系와의 접목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한간 물류비용 등 諸去來費用의 절약과 聯繫事業의 공동진출형태가 적절할 것 같다. 清算決済制度는 외화난의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KEDO형 투자사업은 資金難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I. 머리말

신정부는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개선을 對北政策의 目標로 설정하고,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추진’을 對北政策의 3大原則으로 천명하면서 ‘政經分離原則’에 입각한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對北政策 推進方向의 하나로 확정하였다. 1998년 4월 30일에 열린 제45차 남북 교류협력 추진 협의회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4·30 南北經協活性化措置’를 내놓음에 따라 남북경제교류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교역은 IMF 救濟金融이후 축소경향¹⁾을 보이고 있고, 經濟構造調整이 진행되는 업계의 현실로서는 대북투자의 여력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현행 남북경제교류·협력수준을 유지 혹은 확대하기가 쉽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남북경제교류의 여건조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南北當局間 北京次官級會談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며, 7년째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經濟難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교류·협력여건의 가시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신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고 있고²⁾ 기업인 혹은 非 기업인의 방북을 전향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民間分野의 自律權을 보다 확대하고 있는 신정부의 ‘政經分離政策’은 남북간 교류·협력의 여건개선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韓半島의 周邊情勢, 南韓經濟의 與件, 北韓體制의 特性 등을 고려할 때 ‘政經分離原則’에 입각한 남북경제교류 활성화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남북경제교류의 확대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세심한 推進方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本考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정부의 경협활성화조치와 ‘政經分離’하의 經濟交流 擴大方案에 대한 민간분야의 논의 동향을 평가하면서 ‘政經分離’하의 南北韓間 經協의 바람직한 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 ‘政經分離’와 經協活性化 方案에 대한 論議動向을 정리하고, 제3장에서 ‘政經分離’ 政策推進의 制約要因

1) 1998년도 1/4분기 남북교역동향을 살펴보면, 223개 품목, 3,341만 달러로서 1997년도 1/4분기 104개 품목, 5,810만 달러에 비해 교역품목은 증가하였으나 교역액수는 43.1%나 감소함. 특히 반입은 1,692만 달러로 1997년의 3,835만 달러에 비해 55.9%나 감소함.

2) 최근 북한은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직접 지침을 하지 않았지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중앙일보, 1998. 5. 12).

과 그에 대한 評價를 살펴본 다음, 제4장에서 ‘政經分離’下의 南北韓間 經協의 바람직한 方向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政經分離’와 經協活性化 方案에 대한 論議

1. ‘政經分離’政策基調와 政府의 ‘南北經協活性化措置’

신정부는 政經分離原則에 따라 남북관계에서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분리하며, 민간의 經濟活動 自律性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대북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을 천명해 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政經分離原則에 입각한 南北經協活性化’가 신정부의 100대 추진과제로 선정된 이후 ‘政經分離原則에 입각한 南北經協活性化’는 국민의 정부의 공식 대북정책 추진방향의 하나가 되었다.

統一部가 밝힌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³⁾’에 의하면 ‘政經分離原則에 입각한 南北經協活性化’는 ①경제논리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②북한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분야부터 추진할 수 있지만 상호이익이 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안부터 추진하며, ③ 이를 위하여 기업인 방북확대, 투자규모 상향조정, 경협절차 간소화 등 南北經協活性化를 위한 諸般措置를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신정부의 대북정책기조는 3월 26일 개최된 제3차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동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전반적인 남북한 관계상황과 연계하여 추진해온 남북경협을 政經分離原則하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남북경협이 남북관계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지고 있다⁴⁾. 신정부의 政經分離原則은 1998년 4월 30일에 열린 제 45차 남북 교류협력 추진 협의회에서 보다 구체화되는데, ‘4·30 南北經協活性化措置’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基本方向과 細部推進對策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經協推進의 基本方向은 경협주체인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며 민간주도에 의한 경

3) 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1998. 5.

4) 최수영, ‘남북경협활성화의 구체화방안’, 「대북정경분리정책 :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민족통일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 공동주최, 제4차 통일경제정책세미나, 프레스센터, 1998. 4. 10, 56쪽.

<표 1>

4·30 南北經協活性化措置의 主要內容

구 분	주 요 내 용						
기 본 방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자율적 판단 존중 - 민간주도에 의한 경협 - 정부는 경협추진 여건조성(과당경쟁,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등) 						
세 부 주 진 대 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접촉·방북</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북요건구비시 승인을 원칙(대기업총수, 경제단체장 포함) - 수사방북제도 확대시행(기업인 방북에도 적용) -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 확대(1년→3년) - 승인처리기간 단축(접촉 : 20일→15일, 방북 : 30일→20일) </td></tr> <tr> <td style="border-top: none;">교 역</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승인품목의 지속적 확대(국내시장영향 최소화범위내) - 위탁가공교역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유류설비의 무상반출, 임대허용 ② 1회 승인한도(현행 100만 달러)의 기준폐지 *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의 관련조항 개정을 거쳐 시행 </td></tr> <tr> <td style="border-top: none;">협력사업</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규모제한 완전폐지(현행 500만~1,000만 달러 규모) - 투자제한업종의 Negative List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략적으로 기술이전이 곤란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산업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방산물자 관련 사업 ② 기타 북한의 전력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300만 달러이하의 협력사업 ②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고용사업 ③ 남북한간 당국합의 또는 당국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사업 *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td></tr> </table>	접촉·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북요건구비시 승인을 원칙(대기업총수, 경제단체장 포함) - 수사방북제도 확대시행(기업인 방북에도 적용) -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 확대(1년→3년) - 승인처리기간 단축(접촉 : 20일→15일, 방북 : 30일→20일) 	교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승인품목의 지속적 확대(국내시장영향 최소화범위내) - 위탁가공교역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유류설비의 무상반출, 임대허용 ② 1회 승인한도(현행 100만 달러)의 기준폐지 *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의 관련조항 개정을 거쳐 시행 	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규모제한 완전폐지(현행 500만~1,000만 달러 규모) - 투자제한업종의 Negative List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략적으로 기술이전이 곤란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산업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방산물자 관련 사업 ② 기타 북한의 전력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300만 달러이하의 협력사업 ②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고용사업 ③ 남북한간 당국합의 또는 당국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사업 *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접촉·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북요건구비시 승인을 원칙(대기업총수, 경제단체장 포함) - 수사방북제도 확대시행(기업인 방북에도 적용) -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 확대(1년→3년) - 승인처리기간 단축(접촉 : 20일→15일, 방북 : 30일→20일) 						
교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승인품목의 지속적 확대(국내시장영향 최소화범위내) - 위탁가공교역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유류설비의 무상반출, 임대허용 ② 1회 승인한도(현행 100만 달러)의 기준폐지 *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의 관련조항 개정을 거쳐 시행 						
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규모제한 완전폐지(현행 500만~1,000만 달러 규모) - 투자제한업종의 Negative List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략적으로 기술이전이 곤란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산업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방산물자 관련 사업 ② 기타 북한의 전력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300만 달러이하의 협력사업 ②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고용사업 ③ 남북한간 당국합의 또는 당국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사업 *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자료 : 통일부 교류협력국

협을 추진하되 過當競爭이나 不公正去來行爲 등은 經協秩序維持와 經協推進 與件造成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일부 교역부분을 중심으로 적용되었던 政經分離的 政策基調⁵⁾가 신정부에 들어서는 경제 전분야로, 그리고 비경제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5) 1996년 9월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남북한간에 긴장이 고조된 시기의 경우 교역여건의 악화로 남북한간 교역이 순간적으로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한간 교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따라서 남북한 교류·협력을 크게 교역, 투자, 비경제부문으로 나누어 볼 때 교역부문은 그동안 정경분리적 정책기조가 일부 적용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다음으로 經協推進의 細部對策으로서는 첫째, ①초청장 등 방북요건 구비시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②협력사업자 승인시에만 적용하던 수시방북제도를 확대하여 교역업자 등과 같은 기업인방북에도 시행하고, ③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며, ④접촉은 현행 20일에서 15일로, 방북은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승인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接觸·訪北 要件 및 節次를 簡素化하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것은 그동안 방북을 제한해 온 대기업총수와 경제단체장도 방북요건을 구비시에는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①남북한간 교역품목의 확대를 위해 현행 205개 품목에 이르는 반입시 ‘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포괄승인품목으로 전환하여 그 수를 점차 줄여 나가며, ②국내유통설비의 무상반출과 임대 허용, 1회 반출설비 승인한도(현행 100만 달러)기준 폐지 등을 통해 설비제공형 위탁가공교역을 촉진하는 등 남북한간 交易增進對策을 내놓고 있다. 남북한간 交易增進對策은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으로 발표되고 있어 그 범위와 폭의 정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셋째, ①현행 500만 달러 혹은 1,000만 달러 이내로 되어 있는 투자규모의 상한선 제한을 완전폐지하고, ②투자품목의 확대를 위하여 사전 허가된 일부 부문에 한해 대북투자를 승인하는 현행의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방식을 일부 금지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방식으로 전환하며, ③투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300만 달러 이하의 투자,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고용사업, 남북한간 당국합의 또는 당국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사업의 경우에는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을 동시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投資制限緩和對策을 내놓고 있다. 이에따라 ①신소재, 전자장비, 전기통신 및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공전자공학 등 ‘對外貿易法’상의 전략물자 관련산업, ‘防衛產業에 관한 特別措置法’상의 방산물자 관련사업 등 전략적으로 기술이전이 곤란한 분야와 ②기타 북한의 전력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의 대북투자가 가능해졌다.

2. ‘政經分離’政策基調와 經協活性化方案에 대한 民間의 論議

신정부의 ‘政經分離’ 政策方向과 관련된民間의 논의는 크게 ①‘정경분리’ 정책기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정부와民間의 역할은 어떻게 정립되는 것이며, ②정경분리하에

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와 추진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가 하는 2가지 이슈로 정리해 볼 수 있다⁶⁾.

먼저 ‘政經分離’ 정책기조에 대한 해석은 이종석씨의 견해가 크게 돋보인다. 이종석씨는 국민의 정부의 ‘政經分離’ 정책은 “김영삼 정부의 정계연계정책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좁게는 대북정책에서 정치(=당국자간 대화)와 경제(협력)를 분리해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뜻하며, 넓게는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정부관계와民間관계를 분리·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民間관계란 기업간 경제협력, 민간교류, 민간지원 등을 말한다⁷⁾”고 해석하고 있다.

전 통일원장관이었던 권오기씨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 수 없다는 맥락에서 ‘政經分離’보다는 ‘政經分離的’이라는 용어가 보다 정확하며 정경분리원칙은 경제가 되도록 하면 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북한은 政經合一社會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⁸⁾. 신창민씨는 신정부가 ‘政經分離’라는 용어를 사용한 의미는 “대북경제교류협력은 현안의 남북정치관계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경제논리 위주로 제약없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해주고 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政經分離原則’이라는 모호한 용어보다는 ‘민간차원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이라는 의미에서 ‘對北經濟交流協力 民間自律性 尊重의 原則’으로 바꾸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⁹⁾.

이상만씨는 경제교류협력에 있어서 기존 ‘政經連繫’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바탕으로 신정부의 ‘政經分離’ 정책은 “통일의 여건조성을 위하여 경제적 접근을 강조하는 政府와 民間의

6)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민족통일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 공동주최로 열린 「대북정경분리정책 :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라는 주제의 제4차 통일경제정책세미나(1998. 4. 10),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정경분리원칙 :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제13차 통일전략포럼(1998. 4. 30), 사단법인 한우리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경분리정책」 세미나(1998. 5. 15) 등에서 발표 및 토론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7) 이종석, ‘정경분리의 여건조성과 정책과제’, 「대북정경분리정책 :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민족통일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 공동주최, 제4차 통일경제정책세미나, 프레스센터, 1998. 4. 10, 6~7쪽.

8) 권오기, ‘정경분리원칙 :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주최 제13차 통일전략포럼, 1998. 4. 30 발표내용 참조.

9) 신창민, ‘대북경제교류협력 민간차원의 존중의 원칙’, 「정경분리정책」, 사단법인 한우리연구원 주최, 사단법인 한우리연구원 창립 8주년 기념 정기학술대회,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회의실, 1998. 5. 15, 2~3쪽.

新役割分擔論”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¹⁰⁾. 같은 맥락에서 통일부 정책실의 김남식 과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政經分離原則은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에 적용되는 방침으로 남북관계 전체를 규율하는 방침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¹¹⁾. 실제로 남북한간의 정부관계에서는 ‘政經分離原則’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북경 남북한차관급회담과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TV대화에서도 분명히 입증되고 있으며¹²⁾, 경제문제라도 남북한간의 정부관계에서는 앞으로도 주고받기(give and take) 식의 ‘相互主義’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政經分離’ 하에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제도적 장치와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는 ①法·制度와 行政節次, ②對北接近 組織體系, ③南北協力基金 등 政府의 支援方式, ④交流協力 增進事業 등의 범주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法·制度와 行政節次는 ①경협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¹³⁾, ②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¹⁴⁾, 그리고 ③경협제한적이라기 보다는 경협지원적이 되도록¹⁵⁾ 규제의 완화와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4·30 經協活性化措置’에 반영된 각종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방안과 함께 ①접촉·방북에 있어서 현행 승인제를 신고제로 점차 전환¹⁶⁾, ②협력사업자승인과 협력사업승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제협력사업

10) 이상만,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대북접근자세 :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대북정경분리정책 :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민족통일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 공동주최, 제4차 통일경제정책세미나, 프레스센터, 1998. 4. 10, 37~42쪽 및 한우리연구원에서 열린 ‘정경분리정책’ 세미나, 1998. 5. 15의 토론내용 참조.

1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정경분리원칙 :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제13차 통일전략포럼, 1998. 4. 30의 토론내용 참조.

12) 1998년 4월 10일 열린 국민과의 TV대화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기구에 주는 것은 조건이 없다. 정부대 정부는 분명히 대가가 있다. 경협은 민간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음.

13) 최수영, 앞의 글, 60쪽.

14) 이상만, 앞의 글, 43쪽.

15) ‘경협제한적이라기 보다는 경협지원적이 되도록’이라는 표현은 필자가 이종석씨의 견해를 요약한 것임. 이씨는 “정부는 개별기업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경협이나 민간교류를 도와주어야 하며 권력이나 법제화를 통해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법령개정은 경협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교역규제보다는 교역확대적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정경분리’가 정치적 수사가 되지 않도록 ‘정경연계론’의 타성을 젖어있는 관료조직의 혁신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음(이종석, 앞의 글, 13~14쪽).

16) 이종석, 앞의 글, 14쪽 및 최수영, 앞의 글, 60쪽.

승인제의 단일화¹⁷⁾, ③경협관련행정업무를 한 부서에서 전담하여 처리해 주는 원스톱서비스 (one-stop service) 체제의 도입¹⁸⁾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둘째, 對北接近組織體系로서는 이종석씨와 최수영씨의 방안이 돋보인다. 이종석씨는 남북경협의 비용·손실의 최소화와 원활한 남북경협 추진을 위하여 ①일정한 대가를 받고 정보를 파는 半官半民의 ‘北韓情報센터’와 ②민간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對政府自律性을 가지는 ‘對北投資諮詢會社’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¹⁹⁾. 최수영씨는 ①남북경협과 관련하여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조정, 정부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대북협상의 창구로 기능할 수 있는 經協專擔民間協議會(가칭 남북민간경제교류협의회)의 구성²⁰⁾과 ②北韓內 經協關聯業務의 專擔과 청산개정, 투자보장장치,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등 各種 經協關聯協定 締結權限을 가지는 ‘南北經協代表府’의 설치²¹⁾를 제안하고 있다.

셋째, 南北協力基金 등 政府의 支援方式은 경협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²²⁾, 민간기업의 수익성 위주의 거래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²³⁾, IMF관리체제로 위기에 빠진 남북경협상황을 고려하여²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은 아직까지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지원사업, 조건,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7) 이상만, 앞의 글, 43쪽 및 박진, ‘IMF시대의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과 대응방안’,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1998. 2., 58~60쪽 및 양범직, ‘남북 교류협력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1998. 3., 12~15쪽.

18) 최수영, 앞의 글, 61쪽 및 신창민, 앞의 글, 11~12쪽.

19) 이종석, 앞의 글, 15~16쪽 참조. 또한 이씨는 ‘對北投資諮詢會社’는 對政府自律性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등 민간경제단체들이 공동출자하거나 순수개인기업의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20) 동 협의회를 경제 4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산하에 업종별로 하부조직을 두며 남북경협에 나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역할분담 및 과당경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임. 또한 별도운영 민간협의회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북한의 ‘광명성경제연합회’ 등 책임있는 기관과 經協關聯對話를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半官半民의 형태로 발전시켜 南北經協關聯 各種會談業務도 수행하게 한다는 것임(최수영, 앞의 글, 62~63쪽 참조).

21) 최수영씨는 남북기본합의서체제하의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가 가동하기전까지는 경협대표부가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 기능을 대신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최수영, 앞의 글, 64~65쪽).

22) 최수영, 앞의 글, 61쪽.

23) 이상만, 앞의 글, 43쪽.

24) 양범직, ‘남북경협의 당면문제와 극복방안’,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1998. 2., 37쪽.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南北協力基金의 운용범위내에서 優先支援對象을 중심으로 지원하거나²⁵⁾ 실향민 기업가들의 고향지원사업²⁶⁾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交流協力 增進事業으로서는 원활한 물자교류와 물류비용의 축소를 위해 ①판문점 또는 남북교통의 접경지역(예: 라진·선봉지역)에 '南北物資交流센터'를 설치하거나, ②휴전선 인근지역 또는 라진·선봉지역에 '南北韓 共同市場'을 개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KEDO형 투자사업'의 추진²⁷⁾, 라진·선봉지역 등에 대한 '공단조성사업²⁸⁾', 그리고 IMF 관리체제로 조성된 외화난을 타개하기 위한 '清算決濟制度'의 도입²⁹⁾ 등이 제시되고 있다.

III. '政經分離' 政策推進의 制約要因과 그에 대한 評價

남한의 정권교체에 의한 대북정책 전환의 추구, 김정일 공식승계의 가시화에 의한 북한의 정책변화 가능성 증대 등은 신정부의 '政經分離' 정책추진의 여건을 개선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 경제의 IMF 관리체제로의 이행에 따른 대북경협추진능력의 변화,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지속에 의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그리고 이들 요인들이 북한의 경제난, 개혁·개방의 지연과 맞물리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켜 '政經分離' 정책추진의 여건을 악화키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요인들이 南北經濟交流協力에 주는 의미를 평가해 보기로 한다.

25) 우선지원대상업체로서는 ①북한에서 생산한 위탁가공제품의 전량수출업체, ②유휴설비를 북한에 이전하고자하는 업체, ③북한과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④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진출하는 업체, ⑤남북한 직항로 개설업체 등을 들고 있음(최수영, 앞의 글, 61쪽).

26) 이종석씨는 "실향민 기업가들이 도별(혹은 군별)로 고향투자단을 구성해서 고향지원 및 북한투자를 실현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먼저 실향민 기업가들이 국수공장이나 식료공장 등 북한이 절실히 원하면서 비용이 적게드는 분야를 중심으로 고향을 지원하고 지원을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적당한 투자사업을 벌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실향민기업가들의 고향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음(이종석, 앞의 글, 18쪽).

27) 박진씨는 "경수로건설과정에서 통해 창출되는 많은 교류협력사업을 감안할 때 다자간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투자사업은 ①투자에 대한 부담이 적고, ②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예기치 않은 행동을 통제할 수 있으며, ③남한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④수교자금 등을 통한 일본 등 주변국들의 북한진출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박진, 앞의 글, 57쪽).

28) 박진, 앞의 글, 57쪽.

29) 양범직, 앞의 글, 37쪽.

1. IMF管理體制로의 移行과 對北經協推進能力

남한경제의 IMF관리체제로의 이행이 우리의 대북경협추진능력에 미친 영향은 크게 ①既存南北經濟交流·協力規模의 縮小, ②정부와 민간의 未來對北經協推進能力의 약화, 그리고 ③한반도 경제교류·협력문제에 대한 周邊國의 影響力 강화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既存經濟交流·協力規模의 縮小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역부문에서 현저해지고 있다. 對미달러 환율에 대한 원화의 平價切下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1997년 11월부터는 남북한간의 實質交易規模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998년 1~4월 實質交易總額은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하고 있는데, 반출(25% 감소)보다는 반입(68% 감소)의 감소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의 위탁가공교역액의 감소가 1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교역감소가 북한의 주종수출품목인 철강금속류 등 單純交易品目에 집중되고 있다. IMF관리체제는 남북교역에 대해 ①북한제품의 남한내 반입액의 현저한 감소, ②남북한 실질교역에서 위탁가공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 ③남북한 총교역에서 기타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로 귀결되고 있다³⁰⁾.

남북교역금액의 축소동향에서 보다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委託加工交易이다. 委託加工交易은 1997년 1~4월까지와 비교해 볼 때 그 반출감소액이 21%로, 3%에 불과한 반입감소폭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未來南北交易能力을 위축시키고 있다.

단순물자반입액의 감소는 철강금속류의 감소가 주원인이고, 그 중에서 금괴 반입감소가 철강금속류 반입감소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³¹⁾. 금괴는 현찰이라 상황변화에 따라 다시 반입이 증가될 수도 있지만³²⁾ 위탁가공교역은 여전히 악화되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세심한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다.

30) 1998년 1~4월까지의 통계를 바탕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할 때 북한상품반입액이 전체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에서 24%로 감소한 반면, 위탁가공교역액은 11%에서 23%로, 기타교역은 10%에서 21%로 그 비중이 증대되고 있음. 그리고 위탁가공교역액이 총실질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에서 52%로 급증하고 있음.

31) 1998년 1~4월의 경우 금괴의 반입은 전무함. 1997년 동기의 경우 금괴의 반입은 3,062만 달러였음. 동기간 철강금속류 반입액은 321만 8천 달러로 전년동기의 4,148만 9천 달러에 비해 무려 92%가 감소한 것임. 1998년 1~4월의 경우 금괴반입이 전년동기수준을 유지했다고 가정하면 반입부문에서 남북한 실질교역의 감소폭은 68%가 아니라 23%가 됨.

32) 금괴 반입감소는 IMF관리체제 이후 남한에서 벌어진 금모으기운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음. 그러나 금괴는 국제시장에서 현찰에 가까우며 거래선의 변화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임.

<표 2>

IMF 관리체제에 따른 남북교역의 변화동향

(단위 : 천 달러)

년	월	대미 환율 ¹⁾	반 입			반 출			총 교 역		
			실질교역 (위탁기공)	기타 교역	소계	실질교역 (위탁기공)	기타교역 (무상지원)	소계	실질교역 ²⁾ (위탁기공)	기타교역 ³⁾ (무상지원)	총계
	1	861.3	11,219 (2,475)		11,219	4,388 (2,165)		4,388	15,607 (4,640)		15,607
	2	863.9	7,954 (2,746)		7,954	6,241 (2,603)	5,371 (345)	11,612	14,195 (5,349)	5,371 (345)	19,566
	3	897.1	19,175 (3,112)		19,175	3,101 (1,179)	1,258 (1,247)	4,359	22,276 (4,291)	1,258 (1,247)	23,534
	4	892.1	29,494 (2,601)		29,494	4,884 (3,961)	3,009 (360)	7,893	34,378 (6,562)	3,009 (360)	37,387
1	5	891.8	14,345 (2,152)		14,345	6,907 (5,848)	4,579	11,486	21,252 (8,000)	4,579	25,831
9	6	888.1	14,870 (3,239)		14,870	6,157 (3,941)	2,490	8,647	21,027 (7,180)	2,490	23,517
9	7	892.0	18,469 (5,224)	878	19,347	8,750 (6,161)	8,481 (2,025)	17,231	27,219 (11,385)	9,359 (2,025)	36,578
7	8	902.0	16,746 (4,601)	100	16,846	5,386 (2,156)	4,424 (1,915)	9,810	22,132 (6,757)	4,524 (1,915)	26,656
	9	914.8	18,802 (7,003)		18,802	5,020 (1,808)	16,791 (1,294)	21,811	23,822 (8,811)	16,791 (1,294)	40,613
	10	965.1	18,143 (5,032)	1,758	19,901	3,866 (2,534)	3,834	7,700	22,009 (7,566)	5,592	27,601
	11	1,163.8	11,229 (2,481)	52	11,281	3,184 (2,253)	4,220 (1,032)	7,404	14,413 (4,734)	4,272 (1,032)	18,685
	12	1,415.2	9,835 (2,228)		9,835	2,135 (1,566)	793 (171)	2,928	11,970 (3,794)	793 (171)	12,763
소 계			190,281 (42,894)	2,788	193,069	60,019 (36,175)	55,250 (8,389)	115,269	250,300 (79,069)	58,038 (8,389)	308,338
1	1	1,572.9	6,575 (3,260)		6,575	2,449 (1,613)	2,562	5,011	9,024 (4,873)	2,562	11,586
9	2	1,640.1	5,977 (2,073)		5,977	3,198 (1,585)	564	3,762	9,175 (3,658)	564	9,739
9	3	1,378.8	4,370 (2,165)		4,370	3,959 (2,562)	3,760 (169)	7,719	8,329 (4,727)	3,760 (169)	12,089
8	4	1,338.2	4,641 (3,077)		4,641	4,261 (2,082)	2,763 (2,707)	7,024	8,902 (5,159)	2,763 (2,707)	11,665
소 계			21,563 (10,575)		21,563	13,869 (7,842)	9,649 (2,876)	23,516	35,430 (18,417)	9,649 (2,876)	45,079

주 : 1) 대미환율은 월말기준으로 시장평균환율임.

2) 실질교역은 교역에서 기타교역을 제외한 수치임.

3) 기타교역은 민간·정부의 대북지원물자, KEDO의 중유지원, 경수로 물자 등임.

자료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IMF 관리체제로 인한 정부와 민간의 未來 對北經協推進能力의 弱化는 남한경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IMF 관리체제로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영향력의 폭과 깊이에 대해서는 분석하기가 쉽지 않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된다.

첫째, 換率上昇으로 인하여 원화표시 위탁가공임, 선박운임 등의 증대로 북한상품의 原價上昇과 價格競爭力 低下로 남북교역 물동량이 감소할 것이다. 기존 남북거래는 주로 남한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래의 대부분이 달러표시로 되어 있어 환율상승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환율상승은 접촉, 방북비용 등 經協 附帶費用의 增大와 함께 원화환산 投資金額 및 現地運營費 增加로 협력사업의 실행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금난, 금리인상, 부채비율 축소 정책 등으로 상징되는 信用危機이다. 신용위기는 금리의 민감성을 초래해 국내생산에 비해 위탁가공기간이 긴 북한상품의 金利費用 上昇을 초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북한상품의 경쟁력약화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신용위기는 유동성확보를 어렵게 함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단순물자교역³³⁾이나 위탁가공교역의 추진을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자금배분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수익성이 높지 않거나 긴급하지 않는 투자대상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것이다. 따라서 수익성이 낮고 위험도가 높으며, 출장비·현지체류비 등의 부담이 큰 북한투자는 기업투자대상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³⁴⁾.

셋째, 마이너스성장 혹은 저성장, 신규투자의 위축 등으로 상징되는 景氣沈滯이다. 경기침체는 내수시장의 규모를 축소시킴에 따라 북한상품에 대한 국내수요를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가격에 비해서 품질경쟁력이 높지 않는 북한상품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내기업의 대북주문량의 감소로 물자반입 및 위탁가공물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내수시장규모가 협소한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경기침체로 인한 남한 내수시장의 위축은 남한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대북투자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넷째, 사업재편, 기업매각, 기업도산, 실업증가 등으로 나타나는 構造調整이다. 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것은 기업의 도산이다. 기업도산은 대북교역업체나 협력사업

33) 위험도가 없는 금괴의 경우도 국가신용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벌어진 금모으기운동에 의해 반입이 전면 중단되고 있음.

34) 경제협력사업자 승인기업중 고합그룹, 국제상사, 한화, 신원 등은 기업의 신용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채권은행단으로부터 협조용자를 받은 바가 있으며, 다른 기업들도 재무구조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따라서 대북추진사업 자체를 전면 유보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추진업체의 퇴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북경제교류에 큰 파장을 던질 것이다. 構造調整은 조직의 재조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북사업의 부서가 위축 혹은 폐지되거나 대북사업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대북사업은 단기적인 수익성개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개념에서 접근해 왔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여파는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³⁵⁾.

다섯째, 세수감소, IMF의 흑자예산 편성 및 지출억제 요구, 구조조정 자금수요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政府의 資金負擔能力의 弱化이다. 자금제약으로 당장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정부예산배정의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정부의 자금체약은 향후 남북협력기금의 규모증대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부의 미래 대북지원능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³⁶⁾. 또한 환율상승으로 인한 대북지원금액의 상승도 정부의 대북자금 공급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경수로건설, 식량제공 등 지원성 대북자금 공급능력은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政府의 對北資金 負擔能力의 弱化는 결과적으로 민간의 경협여건을 악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민간과 정부의 대북경협추진능력의 약화는 한반도 경제교류·협력문제에 있어서 남한의 對北影響力を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물론 남한의 대북영향력 약화가 곧 바로 주변국의 대북영향력의 강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경제교류·협력문제에 있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周邊國의 影響力이 강화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가 힘들다. IMF관리체제로 비수익성 베이스에 의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던 대북사업의 토양이 침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IMF구제금융과 정부의 예산제약으로 인하여 국제기구, 주변국 등에 대한 정부의 國際的 發言權이 약화된 것도 대북영향력의 퇴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5) “많은 기업들이 대북사업을 통해 이익을 보기보다는 손해를 본 것이 사실이며, 기업들이 누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대북경제교류를 지속해 온 것은 장기적 시장확보라는 전략적 측면과 손해본 것을 만회해 보겠다는 전술적인 측면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동용승, ‘남북경협의 환경변화와 활성화방안’,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1998년 상반기호(통권 제 29 호), 93쪽).

36) 1998년에 1,000억 원의 신규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조성하려던 통일부의 계획이 전면 무산된 바가 있음.

2. 동아시아 金融危機의 持續과 韓半島의 經濟的 力學

1997년 중반이후 아시아에 불어닥친 금융위기는 한반도내와 한반도주변의 經濟的 力學을 바꾸어 놓아 북한에 대한 남한과 주변국의 영향력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진행된 동아시아의 금융위기의 여파는 1차적으로 ①남한의 대북경협추진능력의 약화, ②북한 경제의 국제경쟁력의 상대적 상실, ③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상대적 영향력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北韓經濟의 國際競爭力弱化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平價切下와 外資誘致努力에 의해 촉발되고 있다. 금융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들은 수출을 장려하고 외국인직접투자 등 외자조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도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줄어드는 外國人投資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①1996년 3월 31일 이전에 비준을 획득한 외자기업의 설비수입면세유예기간을 1997년 12월에 무기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고³⁷⁾, ②유럽 기업의 유치에 보다 비중을 둔 외국인투자 장려프로젝트 리스트를 1997년 12월 29일에 승인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³⁸⁾, ③최근에는 도·소매업시장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外國企業 新優待政策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⁹⁾.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있기 전에도 투자여건의 미비⁴⁰⁾로 외국인투자자들이 북한투자를 기피했던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쟁적 외자유치노력은 투자지역으로서의 北韓經濟의 魅力度를 한층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한 경제의 약화로 한반도 통일시를 대비한 北韓市場의 魅力度도 한층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북한 경제에 타

37) 백주현, '중국, 외자기업의 설비수입 면세유예조치연장', 한국수출입은행, 수은조사월보, 1997. 12., 72~73쪽.

38) 經濟導報社, 中國經濟新聞, 1998. 3. 2.

39) 중국 대외경제합작부의 관계자는 "동남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국의 외자유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1998년 1~4월에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수는 5,704개로 작년동기대비 6.8%가 줄었다"면서 "중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홍콩이 동남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어 외국기업 우대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김영근, '中, 외국인에 신우대정책', 한국경제신문, 1998. 5. 20).

40) 1997년도 하반기 북한경제는 완충기의 혁명적 경제전략으로 제시되었던 농업·경공업·무역 등 3대 제일주의는 정권창건 49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1997. 9. 8) 이후 퇴색되고 대신 농업, 석탄, 전력, 금속공업, 철도운수 등 사회주의경제건설방침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물경제 전부문의 생산활동이 전년동기보다 위축된 동향을 나타내고 있어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통일부, 1997년도 하반기 북한경제동향, 1998. 4., 68쪽).

격이 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서방과 동아시아간의 經濟的 力學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는 IMF구제금융을 신청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에 가장 많은 경제적 이권을 가지고 있던 중국(홍콩 포함)과 일본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고 있다. 자산가치의 하락, 부실채권의 증가 등 投資資產의 財產的 損失이외에도 본국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본국 경제의 방어가 급선무라 國際問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IMF 등 國際機構의 影響力이 보다 강해졌으며, 동아시아 증권시장⁴²⁾과 외국인투자시장, 그리고 세계수출시장에서 美國 등 西方圈의 影響力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동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진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어 상황여하에 따라서는 그 여진의 강도가 생각보다 강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이후 중국, 일본은 構造調整 등 금융위기에 의해 초래된 본국경제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平價切下가 계속되고 있는 일본 엔貨과는 달리 중국 인민폐의 평가절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⁴³⁾ 향후 중국 인민폐의 平價切下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⁴⁴⁾. 만일 중국 인민폐의 平價切下가 이루어 진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는 현재 태국－인도네시아－한국을 거쳐 홍콩－중국으로 파급되고 있는 양상이다. 中國 인민폐의 平價切下는 홍콩경제에 대한 타격이 될 뿐만아니라 그 여파가 다시 태국, 인도네시아－한국에 미치는 구조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될 경우 韓半島를 둘러싼 經濟的 力學은 또다시 변동하게 될 것이다.

中國 인민폐의 平價切下는 제2의 금융위기를 잉태하면서 2차적으로 ①남한의 대북경협추진 능력의 계속적 약화, ②북한경제의 국제경쟁력의 계속적 상실, ③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미국 등 서방영향력의 계속적 강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직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韓國經濟의 狀況을 고려할 때 중국 인민폐의 平價切下는 그 시기가

42) 최근 외국인이 한국 증권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점이 이에 대한 한 반증이 될 것임.

43) 1997년 중반 동남아 통화위기 발생이후 아시아 각국의 통화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데 비해, 중국 인민폐는 별다른 영향없이 오히려 소폭 절상되고 있음.

44) 중국 인민폐의 평가절하와 관련된 상황은 전선준, '중국,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경제 변화 및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수은조사월보, 1998. 5., 50~55쪽 참조.

빠를수록⁴⁵⁾ 그리고 그 폭이 클수록 충격의 강도는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만일 중국 인민폐의 평가절하가 1998년 3/4분기에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남북 경제교류·협력규모와 미래의 대북경협추진능력은 크게 침식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민간분야의 경제교류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 南北關係에서 國際機構와 周邊國의 影響力이 보다 강해지는 구조를 만들게 될 것이다.

3. 北韓 經濟體制 特性要因과 對北經協與件

북한경제는 ①이제 막 경제개발을 시작하는 開發途上國經濟로서 개방경제로서의 여건이 미비하며, ②개혁·개방전의 社會主義 經濟運營 메커니즘이 관철되고는 있으나, ③여타 사회주의 경제에 비해 物資不足經濟의 속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④政治論理에 의한 경제의 지배도가 아주 높은 경제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北韓經濟體制의 特性은 ①접촉－합의－계약－조업으로 진행되는 경협사이클에서 합의사업이 조업사업으로, 그리고 損益分岐點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빈도가 극히 저조하고, ②경협사업에 대한 판단을 장기적 성과보다는 短期的 成果를 중시함과 동시에 비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며, ③사업진행에 있어서 해당 프로젝트와 관계가 없는 부문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④사업성공을 위한 여건조성에 힘쓰기 보다는 외화벌이에 치중해 사업 성공보다는 事業失敗의 危險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⑤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경제구조⁴⁶⁾ 등과 같은 經協與件을 조성하고 있다⁴⁷⁾.

이와같은 對北經協與件은 남한경제의 IMF관리체제로의 이행,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의한 한반도의 경제적 역학 변동과 맞물리면서 대북경협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北韓經濟體制의 特性要因에 대해 느끼는 敏感性을 보다 강화시키고 있다. 남한경제의 IMF관리체제로의 이행, 동아시

45) 1998년 하반기부터는 중국 인민폐의 평가절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평가절하의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구소, '중국 인민폐 평가절하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1998. 3. 2 참조.

46) 예를 들어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광산자원의 개발은 먼저 공장의 시설 근대화와 광산 개발장비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이는 광물자원을 인도받기전에 금융의 제공을 의미하고 있음. 일단 개발된 광산자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수송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경제성 있는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력문제의 해결과 함께 부족한 화차, 차량 및 차량부속품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항만을 이용할 경우에는 하역장비의 제공과 함께 항만시설의 근대화가 필요함.

47) 경협여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종렬, '남북경제교류현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수은조사월보, 1997. 8., 4~25쪽을 참조.

아 금융위기의 지속경향은 남한기업들에게 ①보다 수익성을 강조하고, ②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며, ③자금의 유동성에 민감하며, ④위험회피적인 事業態度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에 특정사업에 대한 평가갭(gap)은 金融危機前에 비해 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금융위기이후 북한이 그동안 남북경제교류 및 대외경제교류에 있어서 보여준 태도를 얼마나 수정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남한측은 ‘政經分離’政策에 의해 어느 정도 평가갭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북한측의 화답이 없다면 평가갭의 확대에 의한 남북경제교류는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南北經濟交流를 活性化하는 북한측의 노력이 없다면, 그리고 보다 전향적인 資本主義市場 參與對策을 북한이 강구하지 않는다면⁴⁸⁾ 남북경제교류에서 民間部門이 차지하는 역할은 확대되기가 쉽지 않다.

IV. ‘政經分離’下의 南北韓間 經協의 方向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정부의 ‘政經分離’ 정책추진의 여건은 향후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확대는 ①남한측이 對北經協與件을 개선해 주거나, ②북한측이 對南經協與件을 개선해 주거나, 아니면 ③남북한이 동시에 經協與件을 개선해 주는 방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 북한측이 對南經協與件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현 여건을 고려할 때 결국 신정부에 의해 단행된 ‘남북경협활성화조치’와 민간분야에서의 경협활성화 방안은 對北經協與件과 對南經協與件의 개선에 얼마나 이바지할 것인가와 북한의 수용가능성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1. 法·制度와 行政節次의 定立方向

‘정경분리’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신정부에 의해 단행된 ‘4·30 경협활성화조치’는 주로 남북경협에 대한 規制緩和와 節次簡素化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30 경협활성화조치’는 경협지원적 조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經協制限的 要素를 제거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어 민간분야의

48) 북한의 경제특구인 라진·선봉지역에 대한 남한자본의 참여는 진출여건의 미비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개방지역으로 관심을 모았던 남포와 원산도 개방의 가시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논의동향을 고려할 때 미흡한 감도 없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남한측의 對北經協與件을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북한측의 對南經協與件을 악화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⁴⁹⁾.

規制緩和와 節次簡素化過程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행정절차가운데는 逆經協指向的 行政節次만 있는 것이 아니라 順經協指向的 行政節次도 있다는 점이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對北協商力을 강화하고 對南經協與件을 개선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경협제한적 절차라기보다는 경협지원적 절차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北韓經濟體制의 特性으로 말미암아 조성되고 있는 對南經協與件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협력사업자승인과 협력사업승인으로 나누어져 있는 經濟協力事業承認制를 單一化할 필요성이 있다는 민간의 논의는 그런 점에서 세심한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一貫性 있는 행정절차이며, 탄력성 있고 서비스정신이 투철한 법운용 정신일 것이다. 대북경협 행정절차의 정비는 일률적인 규제완화 및 절차간 소화보다는 順經協指向的 行政節次가 되도록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2. 對北接近 組織體系의 構築方向

‘정경분리’ 정책방향에 의해 자율권이 신장되고 대북경협을 주도하게 될 민간분야의 對北接近組織體系에 대한 논의는 북한정보센터, 對北投資自問會社, 경협전담민간협의회, 남북경협대표부 구성 등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對北投資自問會社를 제외하고는 민간조직이기는 하나 準政府的 性格의 부여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의 조직설계방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선 정보센터나 對北投資諮詢會社는 多多益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데이터의 효율적 수집과 질 높은 정보를 확보하는데는 自由競爭體制가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센터나 對北投資諮詢會社에 정부가 참여하는 방안은 불필요할 것 같다. 정부는 이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선에서 그 역할을 정립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準政府的 組織設計方案은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조정, 대북협상력의 강화, 민간기업

49) 신정부에 의해 규제완화와 절차간소화정책이 단행된다는 소식이 언론에 공표된 이후 대북경협 사업이 일시 중단되고, 북한측이 남한의 양보를 종용함에 따라 사업여건이 악화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민간 단체들이 기업간 이해의 조정을 통해서 役割分擔과 過當競爭豫防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自律調整은 정치논리에서는 정당화될 수도 있으나 경협질서유지와 과당경쟁에 대한 예방은 최종적으로 정부 몫이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자칫 대북협상력의 강화라는 명분하에 對北協商窗口의 一元化 논의로 비화되면 또하나의 규제장치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北韓의 對外經協窗口가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국제무역촉진위원회, 광명성경제연합회 등⁵⁰⁾으로 나누어져 있고 라진·선봉경제특구를 제외한 대남경협사업은 광명성경제연합회로 일원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측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北韓의 對外經協窗口는 北韓經濟體制의 特性要因으로 파생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그러한 제도유형을 남한이 따라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민간자율 성 존중의 취지에 맞게 정부적 성격을 배제하고 민간이 스스로 알아서 필요한 조직을 만들게 하는 것이 적절하며, 對北經協窗口는 많을 수록 좋을 것 같다.

대북접근체계의 구축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유형보다는 조직의 기능이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전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남북한간에 특정사업을 놓고 평가하는 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평가갭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投資諮詢會社의 活性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이 적절할 것 같다. 투자자문회사는 비정상적이고 고비용지향적인 현행의 南北經協事業을 정상적이고 저비용지향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런 관점에서 ①정보지원, ②협상지원, ③사무실 지원, ④인력지원 등 여러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3. 南北協力基金 等 政府의 支援方向

'4·30 경협활성화조치'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基金支援問題는 IMF관리체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민간분야에서의 논의는 조심스럽게 民間經協事業에 대한 정부의 기금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남한경제의 IMF관리체제로의

50) 북한은 민간기구라고 주장하나 북한정부가 민간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대외기구로서 일종의 종합상사적 기능을 수행함.

이행이후 축소지향적이며 담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남북경협의 규모가 '4·30 경협활성화조치'에 의해 반전이 될 수 있느냐하는 점일 것이다. 협력사업에 대한 영향은 장기간이 소요 된다는 점에서 '4·30 경협활성화조치'의 1차적 평가는 곧 있을 정부의 交易增進後續對策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전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정경분리'정책추진의 여건을 볼 때 기금의 지원없이 IMF 관리체제이전의 交易規模以上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런 관점에서 非經濟的 事業위주로, 그리고 국제기구지원, KEDO지원 등 정부사업위주로 집행되고 있는 현행의 南北協力基金支援方式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기금의 지원은 ①기금의 사용을 확대하면서 기금규모의 증액을 도모하는 방향에서⁵¹⁾, ②제3국과의 경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보다는 불리⁵²⁾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③자금제약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다수기업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으며⁵³⁾ 우선사업을 중심으로 배정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基金支援의 優先事業으로서는 ①대남경협여건의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 ②수출증대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 ③기금의 지원에 의해 여러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④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失鄉民企業家들의 故鄉支援事業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타당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비지니즈(business)사업에 대한 접근방법과 인도주의적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르듯이 경제사업에 대한 기금의 지원방식과 비경제사업에 대한 기금의 지원방식은 틀려야 할 것이다. 비지니스(business)적 목적과 非비지니즈(non-business)적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失鄉民企業家들의 故鄉支援事業은 IMF 관리체제하에서는 자금제공의 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4. 交流·協力 增進事業方向

交流·協力 增進事業方向에 대한 민간의 논의는 南北物資交流센터의 설치, 南北韓 共同市場

51) 기금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출연, 운용수익의 확대, 유상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 바, IMF 경제체제하에서는 신규출연이 어려우며, 운용수익은 대기상태의 자금을 관리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유상지원이 가장 타당한 방책으로 생각됨.

52) 남북경협사업에는 제3국에 대한 해외투자, 수출입 등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금융이 현재로서는 제공되지 않음.

54) 다수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투자분야 보다는 교역분야가 적절할 것 같음.

의 개설, KEDO형 투자사업의 추진, 공단조성사업의 시행, 清算決濟制度의 도입 등으로 제기되고 있다.

‘南北物資交流센터’의 설치는 南北物流費用을 줄일 수 있고 交易品目의 開發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南北韓 共同市場’의 개설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북한의 配給體制를 보완할 수 있고 교역을 통해 북한주민이 필요로 하는 生必品도 공급할 수 있어 바람직한 구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①남북한간에는 交易可能品目이 적으며, ②남북한의 직접적인 접촉을 기피하는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경제성의 확보와 북한의 수용가능성이 변수가 될 것이다. 경제성과 수용가능성을 생각할 때 物資交流센터와 共同市場은 國際接境地帶를 중심으로 국제물자교류센터로서의 기능과 국제공동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가미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단조성사업’은 生產據點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북한의 경우 공단조성의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공단조성사업’은 ①북한의 경제가 부족경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聯關事業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향, ②IMF 관리체제 이후 수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國際物流體系와의 접목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는 방향, ③남북한간 물류비용 등 諸去來費用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清算決濟制度’는 ①IMF 관리체제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單純物資交易을 확대할 수 있고, ②딜러결제에 대한 민간분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으며, ③바터무역을 통해 신규물동량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사업이나, ‘KEDO형 투자사업’은 ①경수로건설과 같이 다자간 접근방식이 필요한 事業類型을 찾기가 힘들며, ②IMF 사태 이후 조성된 資金難으로 사업추진자금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V. 맷음말

신정부의 ‘政經分離’정책은 남북경협여건의 개선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경제의 IMF 관리체제로의 이행,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지속 등으로 인하여 南韓의 對北經協推進能力은 弱化되고 北韓經濟의 魅力度도 저하되고 있어 ‘4·30 경협활성화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

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政經分離’정책방향하에서 민간과 정부는 대북경협여건의 개선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北韓의 對南經協與件의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政經分離’정책의 구체화과정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交流·協力 活性化 方案은 北韓의 對南經協與件의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각도에서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이후 한반도주변의 經濟的 力學은 변동되고 있으며, 그리고 금융위기의 지속은 향후 한반도주변의 經濟的 力學의 변동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금융위기는 國際機構, 美國 등 西方圈의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주변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韓半島에 대한 南韓의 影響力を 약화시키고 있다. 남한의 대북전략은 변화된 한반도상황에 적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對北經協戰略의 具體化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권오기, ‘정경분리원칙 :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주최 제13차 통일전략포럼, 1998. 4. 30.
2. 박진, ‘IMF시대의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과 대응방안’,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1998. 2.
3. 배종렬, ‘남북경제교류현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수은조사월보, 1997. 8.
4. 백주현, ‘중국, 외자기업의 설비수입 면세유예조치연장’, 한국수출입은행, 수은조사월보, 1997. 12.
5. 신창민, ‘대북경제교류협력 민간자율성 존중의 원칙’, ‘정경분리정책」, 사단법인 한우리연구원 주최, 사단법인 한우리연구원 창립8주년 기념 정기학술대회,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회의실, 1998. 5. 15.
6. 동용승, ‘남북경협의 환경변화와 활성화방안’,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1998. 상반기(통권 제 29호).

7. 양범직, '남북경협의 당면문제와 국복방안',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1998. 2.
8. _____, '남북 교류협력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1998. 3.
9. 이상만,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대북접근자세 :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대북정경분리정책 :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사단법인 통일경제 연구협회·민족통일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 공동주최, 제4차 통일경제정책세미나, 프레스센터, 1998. 4. 10.
10. 이종석, '정경분리의 여전조성과 정책과제', 「대북정경분리정책 :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민족통일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 공동주최, 제4차 통일경제정책세미나, 프레스센터, 1998. 4. 10.
11. 전선준, '중국,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경제 변화 및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수은 조사월보, 1998. 5.
12. 최수영, '남북경협활성화의 구체화방안', 「대북정경분리정책 :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민족통일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 공동주최, 제4차 통일경제정책세미나, 프레스센터, 1998. 4. 10.
13.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14. _____, 1997년도 하반기 북한경제동향, 1998. 4.
15. _____,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1998. 5.
1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구소, '중국 인민폐 평가절하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1998. 3. 2.
17. 중앙일보, 1998. 5. 12.
18. 한국경제신문, 1998. 5. 20.
19. 經濟導報社, 中國經濟新聞, 1998. 3. 2.